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이수현 위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변자	평창군수 (기획실장)	일자	질의 : 2000년 12월 12일 답변 : 2000년 12월 13일
회 의	제82회 평창군의회 (정례회) 제1차 예결특위		

【 질의요지 】

-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기준

【 답변요지 】

"별첨"

문서 번호	기획13310- 102
보준기간	3년
결제일자	2000. 3. 28.

기 안	담 당	실 장	부군수	군 수
이시근	M.W	Seo, J.H.	6711	348
협 조				

『任意補助團體 補助金』執行方針

平 昌 郡

任意補助團體 補助金 執行方針

-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『임의보조단체 보조금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
 -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에 따른 내부방침을 설정 지원하고자 함.

□ 現　況

- 지원근거 :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및 평창군조례
⇒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용　　도 :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
- 예산편성 기준액 : 173백만원(2000예산액 : 70백만원)
- 지원절차
 - 보조금 신청(각종단체) ⇒ 보조사업 적정성 검토(관련부서)
⇒ 보조결정(관련부서) ⇒ 보조금 지급 ⇒ 보조사업시행
⇒ 보조금 정산서 제출(보조사업자) ⇒ 정산검사(관련부서)
⇒ 보조사업 완료

□ 問題點

- 보조금지원에 대한 형평성 결여로 사회단체간 불만표출
- 민선단체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다수주민 의혹 제기
- 지원받는 단체만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

※ '99년도 임의보조금 집행상 문제점

○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 지원

-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, 대한무공수훈자회,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4개단체에 8백만원 지급

(단위:천원)

단체명	보조사업명	지원액	비고
계		8,000	
무공수훈자회	안보교육장 견학	2,000	
상이군경회	안보교육장 견학	4,000	
평창군노인회	노인케이트볼장설치	1,000	
바르게살기협의회	조형물건립사업	1,000	

○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된 사업을 임의보조금에서 지원

-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된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나
- 6·25행사 및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에서 지원

☆ 6·25행사(재향군인회) ----- 4,000천원

☆ 의용소방대운영(의용소방대연합회) ---- 1,400천원

⇒ 2000년에는 당초 예산에 既 확보

(6·25행사 : 6,000 의용소방대 : 4,000)

○ 보조금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없이 집행

- 임의보조금 지원시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미흡하였고, 소요사업비에 대한 사실 검증없이 요구액 그대로 지원

'99년도 집행현황 : 25개 단체 77,200천원

□ 任意補助金 執行方針

-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금지
 - 단, 정액보조단체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요구시 추경 예산에 반영 지원
- 보조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50% 의무화
- 사업규모, 군정기여도 등 등급별로 구분, 점수화하여 한도금액 설정 지원
- 보조액 1,000만원이상 사업은 지원 금지
- 동일단체, 동일사업에 대한 이중지원 금지
-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급조된 단체 지원제외

①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금지

- "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"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는 지원 불가

(정액보조단체 현황)

단 체 명	년간 지원 액	비 고
대한노인회 평창군지부	8,000천원	
평창군체육회	2,400	
상이군경회 평창군지회	10,000	
전몰군경유족회 "	10,000	
전몰군경미망인회 "	10,000	
대한무공수훈자회 "	10,000	
평창문화원	16,240	
바르게살기협의회	29,600	-군 16,000 -읍·면 13,600
새마을협의회(남·여)	55,200	-군 36,000 -읍·면 19,200

※ 단, 정액보조단체의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 요구시 추경예산에
반영 지원

② 보조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50% 의무화

- 현행 보조금 지원시 각급 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지원하여 왔으나
 - 보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내역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필수경비만 지원하고
 - 필수경비의 50%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
⇒ 군비 50%만 지원

**③ 사업규모, 군정기여도 등 등급별로 구분 정수화하여 지원
한도금액 설정 지원**

○ 등급표 설정

등급(점수)	단체규모 (인원)	행사규모 (참여인원)	행사개최횟수 (연간)	군정기여도
1등급(100점)	100명이상	1,000명이상	5회이상	상
2등급(60점)	50명이상	500명이상	3회이상	중
3등급(40점)	50명미만	500명미만	3회미만	하

○ 지원금액

300점 이상	200점 이상	200점 미만
1,000만원까지	500만원까지	300만원까지

○ 지원제외대상

-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 소관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사

(단체·회원들간의 체육행사, 친목행사, 견학, 연수활동 등
자체행사)

※당해 사회단체의 설립이념 및 주요 활동목표와 부합여부
정확히 검토 결정

④ 보조액 1,000만원이상 사업은 지원 금지

- 보조사업 총액이 1,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금지하고
 -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도록 유도

⑤ 동일단체,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금지

- 동일한 단체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시 기 예산편성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
 - 이중적으로 임의보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사례금지

⑥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급조된 단체는 지원 제외

- 단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급조하여 임의로 설립된 단체는
 - 그 단체의 설립배경, 향후 사업계획, 존속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결정

□ 行政事項

○ 보조사업계획서의 신중한 검토 실시

- 보조금 신청서 접수시 관련부서별로 임의보조금 집행방침에 의한 지원여부 신중히 검토

-주요 검토사항

- 행사지원 경비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
- 행사의 규모, 적정성, 군정기여도 등 사업효과
- 각급단체의 설립목적, 활동실적 등

○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 실시

-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용도외 사용여부와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이행하고
-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 감액조치

○ 관련부서에서 보조신청 접수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 이행

- 각급 단체의 보조금 신청시 관련 부서 임의판단 지양하고,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 이행